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해외환경규제동향



'해외환경규제동향'은 환경부와 전경련이 함께 운영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EU, 자동차 CO₂ 배출 법률적 규제 도입 결정

- 2012년까지 평균 배출량 130g/km 달성 요구 예정 -



EU가 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규제하는 법적 강제조치 도입을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발표한 자동차 CO₂ 감축 통합전략 Communication [COM(2007) 19 final]을 통해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대해 2012년까지 주행 거리 1km 당 CO₂ 평균 배출량 130g 이하를 만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 이행노력에 실망한 EU 당국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 CO₂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는 법률 도입 추진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이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EU는 2012년까지 자동차의 CO₂ 배출을 120g/km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발표된 Communication에서 집행위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자동차

CO₂ 배출 감축 의무화 법률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위측은 당초 2012년까지 자동차 평균 CO₂ 배출수준을 120g/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동차 업계와 집행위 내 기업위원회 저항에 부딪히면서 규제수준을 다소 완화해 평균 배출량 130g/km 만족을 요구하는 선에서 절충한 해당 법률안 골자를 마련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10g/km은 자동차 연료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에어컨 효율기준 및 타이어 회전저항 기준 설정을 비롯해 바이오 연료사용 촉진과 같은 별도 조치를 통해 감축함으로써 자동차부문 CO₂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CO₂ 평균 배출량 130g/km 수준까지 감축 의무화를 어떻게 개별 자동차 메이커와 각 자동차 모델에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관련해서 집행위 기업위원회 측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배출감축 의무를 차등화해 큰 차량일수록 더 많은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집행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자동차 CO₂ 규제조치 도입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안을 금년 말이나 늦어도 2008년 중순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EU 집행위, ENDS 등

CONTENTS

헤드라인

1

EU, 자동차 CO₂ 배출 법률적 규제 도입 결정

해외동향

2

- 미 캘리포니아판 RoHS, 올 1월 이후 제조된 제품에 대해 적용
- 독일, 친환경인증 목재사용 제품 공공 구매 의무화
- 미국, 연방기관에 대해 EPEAT 등록 친환경 컴퓨터 구입 의무화
- Nokia, 지속적 친환경전자기업 세계 1위
- 제품환경성 규제 이행에 따른 무역기밀 노출 우려 증가

전문가 리포트

5

REACH 시행에 따른 산업계와 정부의 대응전략

관련 국제회의 정보

8



미 캘리포니아판 RoHS, 올 1월 이후 제조된 제품에 대해 적용



미국 캘리포니아 판 RoHS로 불리는 '폐전자제품재활용법(The Electronic Waste Recycling

Act of 2003)'에 따라 올해부터 4인치 이상 스크린을 포함하는 특정 전자제품에 대한 특정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조항 시행과 관련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대상제품에 대해 적용한다는 긴급 시행규칙(emergency regulation)을 작년 말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의 모태가 된 EU RoHS 지침의 '시장출시(put on the market)' 시점이 아닌 제품의 제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올 1월 1일 이후 제조된 대상제품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및 6가크롬 사용이 제한된다.

동 법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유독물질관리부(DTSC,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가 시행규칙안을 발표했을 당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전자업계의 우려가 많았다. DTSC는 EU RoHS 지침의 '시장출시' 개념에 따른 규제적용 입장을 고수했으나, 관련업체는 이미 EU에서도 시장출시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었고, 특히 기업입장에서 제품이 특정 주에 특정 시기 출시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EU와 같은 접근방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리고 이를 DTSC가 수용하면서 이번에 제조시점을 기준으로 유해물질을 제한한다는 시행규칙이 채택된 것이다. 제조시점을 기준으로 한 규제 적용을 통해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대상제품에 대해서는 규제적용이 되지 않음이 명확해졌다. 즉, 규제를 만

족하지 않는 대상전자제품의 역내 판매 불법 유무 판단이 명확해진 셈이다.

폐전자제품재활용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8월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CRT 및 이를 포함하는 기기, LCD 및 PDP TV, 노트북 컴퓨터 등 4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포함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기기 판매시 재활용 요금이 2005년부터 소매가격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대상제품 내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함량이 EU RoHS 지침에서 규정된 물질별 최대허용농도(납, 수은, 6가크롬 : 0.1%, 카드뮴 : 0.01%)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의 역내 판매가 금지된다. EU RoHS 지침 제한대상 유해물질 중 브롬계 난연제 2종(PBB, PBDE)은 별도의 법규에서 따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DTSC는 제조시점을 기준으로 유해물질을 제한한다는 시행규칙과 함께, 4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포함하는 휴대용 DVD 플레이어를 대상제품에 추가하는 긴급 시행규칙을 채택했으며, 이는 올 7월부터 적용된다. 주 의회는 작년 캘리포니아판 RoHS의 적용대상을 EU RoHS 지침과 동일하게 대폭 확대하는 '유해물질 제한 확대법안(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Extension, AB 2202)'을 제안한 바 있다. 작년 5월말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특정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제품은 4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포함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기기에 국한된다.

출처 | 캘리포니아 DTSC, EIATRack



독일, 친환경인증 목재사용 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독일이 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 친환경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igmar Gabriel 환경부장관은 "친환경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의무화한 조달법 실시는 불법 벌채 등에 대한 확실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독일정부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속가능 목재 인증 제도인 FSC 인증을 획득한 목재와 더불어 독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PEFC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친환경 목재로 인정할 방침이다. FSC 인증제도는 국제 산림 보호위원회(Forest Stewardship Council)가 지속가능한 방



식으로 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에 대해 친환경인증을 해주는 제도이며, PEFC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제도는 제3자 인증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촉진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민간기구 PEFC 위원회가 운영하는 국가 산림인증제도이다. 현재 독일 산림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700개에 달하는 독일 제지 및 목재회사들이 PEFC 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독일은 비



롯데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을 포함해 PEFC 인증제품 구매를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정부 조달정책을 반영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PEFC 위원회 측은 밝히고 있다.

이번에 독일이 공공구매 대상 친환경 목재로 FSC 인증제

품뿐만 아니라 PEFC 인증제품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구매대상 목재제품 선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이번 조치로 목재 관련 업체들의 제품 생산 시 환경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ENDS, PEFC



미국, 연방기관에 대해 EPEAT 등록 친환경 컴퓨터 구입 의무화

지난 1월 24일 발표된 미국 부시 대통령 행정명령 “Strengthening Federal Environmental, Energy, and Transportation Management” [Executive Order 13423]에 따라 모든 연방기관들은 컴퓨터 환경성 평가도구인 EPEAT (Electronic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 www.epeat.net)에 등록된 친환경 컴퓨터를 구매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에 대해 구매하는 컴퓨터제품의 95% 이상을 EPEAT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EPA) 지원 프로젝트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친환경컴퓨터 정보제공 시스템인 EPEAT는 정부 등 대량 구매자들이 설정된 환경기준에 기초해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및 모니터를 포함한 컴퓨터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해 구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제품 구입시 제품 환경성을 고려한 구매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달지원 시스템이다.



[EPEAT 시스템의 3개 등급 및 마크]

이 시스템은 연방 녹색조달 프로그램의 친환경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면서 시스템 등록제품이 최근 빠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연방기관의 친환경전자제품 구입 및 친환경 폐기를 위한 자발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Federal Electronics Challenge (FEC)에서는 2008년까지 참여기관이 구매 컴퓨터의 95% 이상을 EPEAT bronze 등급 이상인 제품으로 구매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행정명령 13423은 이러한 자발적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목표를 연방기관에 대해 의무화한 것으로 향후 관련 기업의 EPEAT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 연방정부가 세계 컴퓨터의 약 7%를 구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스템 활용의 중요성은 현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 13423은 연방기관에 대해 에너지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촉진, 친환경제품 조달, 물질약 등 10개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실천 목표를 설정하고 연방기관에 대해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기관의 이행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OFEE, Green Supply Line, EPEAT



Nokia, 지속적 친환경전자기업 세계 1위

작년 12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세계적인 IT 전자기업의 친환경성 평가 순위에서 평점 7.3(10점 만점)을 받은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회사인 노키아(Nokia)를 1위로 발표했다. 2위에 랭크된 델(Dell)과 비교할때 노키아는 특히 독성 화학물질 사용감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린피스는 안전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유해물질 비함유 제품 수요 촉진을 목적으로 분기마다 전자기업 대상 친환경성 평가를 실시해 그 순위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노키아는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oHS)이 시행되기 전인 2005년 이미 세계 최초로 RoHS 지침에 부합하는 노키아 5140i를 출시해, 타 IT 기업에 모범을 보였다. 이 외에도 2005년 말부터 모든 휴대폰 내 PVC 사용을 중지했고, 2007년 초까지는 제품 내 모든 부품에 PBB와 PBDE를 포함한 모든 브롬계 난연제 사용을 중지할 예정이다. 노키아는 유해물질 대체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타 전자 업체와의 공동 정보망인 RosettaNet (www.rosettanet.org)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폐제품 회수와 처리에 있어서도 업계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노키아의 유해물질 함량이 적은 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인 65~80%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노키아는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폐단말기 회수, 판매점 내에 재활용 수거함 설치 또는 우편을 통한 수거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폐제품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참여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eBay의 Rethink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Rethink 프로그램은 eBay 링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자사 전자제품 폐기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 게시와 더불어 가까운 재활용센터 위치까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노키아는 최근 충전 능력 향상에 초

점을 맞춘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올해 중반에는 배터리 재충전 완료 시 알람을 통해 충전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는 하는 충전 알람 장치가 장착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가장 친환경적인 회사가 되기 위한 노키아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들은 전세계 환경단체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노키아의 친환경정책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주주들과 지역사회의 신임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확대 및 개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처 | KOTRA 헬싱키 무역관



제품환경성 규제 이행에 따른 무역기밀 노출 우려 증가

EU 환경법률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제품관련 기밀정보를 제3자가 관리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전자업계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판 RoHS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에 따라 규제대상 유해물질 분석이 의무화된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유럽의 제품관련 환경법규에서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호 문제는 핵심 이슈라기 보다는 부차적인 사항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제품관련 환경법규가 여러 나라로 확산·채택됨에 따라 많은 제3자들이 민감한 제품정보를 수집하고 다루게 됨으로써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EU 역내의 경우 이러한 정보누출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적재산권 보호관리가 좀 더 느슨한 국가에서는 기업의 많은 기밀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이 전혀 없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EU의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을 모태로 EU와는 다른 이행방법을 채택해 자국판 RoHS법규를 시행할 예정인 중국에서 특히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의 RoHS 규제는 생산자에게 해당 법규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자체선언 방식으로 증명하도록 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생산자는 자사제품이 RoHS 규제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출시 이후에 제품의 적합성 문제가 제기되어 단속기관이 생산자에게 적합성 증빙을 요구할 경우 생산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중국판 RoHS는 시장판매 전에 중국 시험기관에서 RoHS 규제 대상 물질에 대한 시험분석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험기관에서의 규제만족여부 분석작업이 이루어지는 동

안 화학조성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므로써 역 설계(reverse engineering)를 비롯해 제품을 구성하는 기밀정보 노출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업계는 특히 중국시장에서의 역 설계 및 제품복제 위험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과 달리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인식이 낮다는 것이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경쟁사 제품을 복제하는 사례를 보고 있는 관련 업계로서는 규제적합성 시험분석 과정 중에서의 정보노출로 인한 역 설계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중국판 RoHS에 따라 생산자는 시장판매 전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위해 중국 주무 부처가 지정한 시험분석기관에서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이란 거대시장을 잃고 싶지 않은 생산자들은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자사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중국 시험기관에 맡겨야 하며, 해당 규제 적합성여부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하고 모든 관련 데이터 정보 기밀을 유지할 것이라는 해당 시험분석기관의 약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시험분석방법을 표준화하고, 시험기관 상호인정을 통해 역의 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은 전세계 RoHS 적합성 시험분석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RoHS 분석 표준을 마련하고 있고, 현재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 표준이 받아들여진다면, 중국 역외의 시험분석기관도 중국판 RoHS 분석기관으로 지정 받아 해당 분석업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역 설계(reverse engineering) : 신제품을 분해하여 정밀하게 분석, 그 설계를 역으로 탐지하는 기술

출처 | Green Supply Line



REACH 시행에 따른 산업계와 정부의 대응전략



환경부 REACH 대응추진 기획단 | 최홍진 팀장

EU에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40여개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전면 개편·단일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0월 초안을 발표한 이래 환경단체, 산업계 등의 논의를 마친 후 2006년 12월 18일 이사회 최종안 의결을 거쳐 2007년 6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가정용 세정제에서 전자제품, 휴대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EU는 REACH제도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계 스스로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관리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REACH 시행에 따라 EU 내 화학물질 및 완제품(화학물질 함유)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사전등록 및 (본)등록을 수행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2008.6.1~11.30, 6개월)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본)등록시 유예혜택(3.5~11년 등록기한 연장)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EU로의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전등록을 하더라도 (본)등록시 막대한 시험비용(물질당 최대 20억원 가량 소요)은 물론 시험자료 생산을 위해 필요한 국내 우수시험기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부족, 위해성 정보DB 부족 및 국내 기업들의 인식부족까지 맞물려 있어 시행시기가 임박했음에도 국내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REACH가 시행되면 EU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타격은 물론, 미국 등의 주요수출국도 유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 7위 화학산업국('05년 기준)인 동시에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REACH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산업계 대응요소와 정부의 지원전략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 REACH제도 소개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대응요소

1. REACH제도란?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EU 내 신설예정인 화학물질관리청(ECHA, European Chemical Agency)에 등록(registration) 및 평가(evaluation)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암성 등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별도의 허가(authorization) 또는 제한(restriction) 등의 조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기존 화학물질 관리제도와와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 책무가 과거 정부 주도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로 이전되었다. 과거에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의무가 REACH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은 물론 기존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위해성 정보를 생산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역외 수출자의 경우는 수입자를 통하거나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을 선임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다.

둘째, 기존 화학물질관리가 물질의 독성위주의 유해성(hazard) 관리라면, REACH 하에서는 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노출까지 고려한 전과정평가 개념인 위해성(risk) 관리로 전환되었다. REACH에서 등록시 요구하는 자료인 화학물질안전성 보고서(CSR, chemical safety report)는 화학물질의 독성뿐 아니라, 유통·사용과정에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노출 정도와 위해성 평가는 물론 그 저감대책까지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화학물질의 생산·유통·사용 등 전과정에서 정보전달 체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제조·수입업체는 REACH 시행 후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를 포함한 물질안전 보건자료(SDS)를 작성, 하위 공급자에게 전달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REACH에서는 '물질별 1회 등록(OSOR, One Substance One Registration)' 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비밀 등을 위한 예외적인 개별등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간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등록해야 한다.

2. REACH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REACH가 시행되면 우선 등록을 위한 막대한 시험비용 부담은 물론, 국내 대응 인프라 부족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독자적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기업은 약 1~2조원의 비용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물질당 시험비용은 0.16~20억원 소요될 것으로 EU(EC JRC)는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화학산업 규모가 유사한 영국은 약 0.93조원(영국 환경부), 일본은 약 7.8조원(니케이신문, '07.1.5)으로 각각 소요비용을 추정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추가로 소요되는

등록비용, 대리인 선임비용 등은 현재까지 추정된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등록서류 작성을 위한 전문가 및 시험기관(GLP) 등 정보생산 인프라 부족으로 상당부분 분석을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원가상승 및 대체물질 개발비용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초석인 중소기업들의 연쇄적인 수출포기, 폐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사전등록 및 (본)등록 기한동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EU 수출 차질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다가올 주요 수출국의 유사제도 도입까지 맞물려 REACH를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무역장벽에 고립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10~15년 사이에 독성 데이터가 대중에 공개되고, 발암·변이성 물질(CMR) 1,400개의 사용이 금지되며, 유럽 내 사용금지 화학물질(제품)은 국내에서도 사용이 중지될 것으로 보여 전통적인 화학산업 이외에 자동차, 전자, 화장품, 섬유, 잉크, 페인트, 사무용품, 포장재, 기타 소비재 전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점차적으로 국내 산업구조는 제품의 개발, 디자인, 생산, 마케팅 등 전 단계에 걸쳐 책임을 강조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산업계 REACH 대응방안

EU 집행위의 산업계 REACH 대응 권고사항('06.9)

How can you reach "REACH"?

- 1) Start today with analyzing your portfolio of chemicals! (제품 내 인화물질 목록작성 즉시 학습)
- 2) Check the scope of obligation! (의무사항 확인)
- 3) Identify your role & tasks under REACH! (역할·업무 확인)
- 4) By when do tasks have to be fulfilled! (업무 완수기한 확인)

이와 같이 국내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복잡·광범위한 REACH제도에 국내 기업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한마

디로 EU에서 제시하는 'EU 집행위 산업계 REACH 대응 권고사항('06.9)'에 따라 추진하는 것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원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REACH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EU로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REACH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진행사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EU의 파트너와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충분히 대응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할 것이다.

둘째, 'EU 집행위 산업계 REACH 대응 권고사항'에 따라 자사 수출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를 파악해 목록화하고,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확인해 대리인 선임 등 등록방법을 결정하고 등록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시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외 협의체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동일물질 수출 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전등록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REACH 등록대상 화학물질은 그 양과 관계없이 2008.6월부터 사전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시하여 대 EU 수출 품목 중 등록대상이 되는 경우 수출물질별 등록기한 등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II. 정부의 REACH 대응 추진전략

1. 기간 대응 추진경과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대응당국으로서 REACH 도입 초기부터 'EU REACH 대응지침'에 따라 대응작업을 추진해왔다. REACH 대응 자체 대책반을 운영('05.6~)하여 화학물질안전성 보고서 작성 시범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REACH 대응을 위한 전제적인 추진계획 수립('06.7)에 따른 국내 'REACH 대응 추진 기획단'을 발족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우선 EU 회원국 및 산업계 등의 REACH 대응 추진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산업계 대상 세미나 및 전용 홈페이지(<http://www.reach.me.go.kr>)('06.11~)를 통해 전파해 나가고 있으며, 업종별 전담전문가로 구성된 도움말센터(helpdesk)를 운영('06.9~)하면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응답, 방문상담 실시 등 화학물질, 업종별로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업계 스스로가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계협의체' 구성을 추진중('06.12~)에 있으며, REACH 시행에 따른 전사(全社)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CEO 포럼(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을 개최하였고, 국내 GLP기관의 지원·육성 등의 취약한 국내 인프라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분석·준비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2. 향후 REACH 대응 종합 추진전략

REACH 대응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EU 대응지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별로 맞춤형 등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취약한 국내 인프라를 감안하여 GLP 기관 등 위해성 정보생산 기반을 대폭 확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과 국내 유입되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를 개



선하는 방안도 증장기과제로 함께 검토중에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관련 정보의 신속 파악 및 제공

EU 공식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REACH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서에 대한 정보를 신속 파악하고 EU/비EU 국가들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홈페이지, 세미나 등을 통해 상세히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순회세미나('07.1.22~26, 중기청 합동으로 개최) 및 분야별 전문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REACH제도 소개와 정부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REACH가 발효되는 시점인 4~5월경에는 EU REACH 담당 핵심실무자를 초청하여 한-EU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REACH 홍보물(사전등록 매뉴얼, 각국의 대응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하고, TV나 라디오 등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REACH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도움센터(helpdesk) 확대 운영

기준에 운영해오던 도움센터를 REACH 시행시기에 맞춰 업종별·분야별 전문가를 확충하여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REACH 대응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늘어나는 산업계 질의·지원요구에 신속하면서 업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문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질의응답 서비스를 위해 EU 집행위의 국가 helpdesk와 협력하여 자체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EU에 문의하여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Q&A, 사례별·분야별 세부안내 지침서도 발간하며, 기업이 스스로 등록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계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는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계 협의체 본격 구성·운영

앞서 설명했듯이 REACH에서는 동일물질을 수출하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등록과 자료공유를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 기업간 공동 대응을 통한 비용절감이 절실한 실정으로 산업계 스스로가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 및 협력의 장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산업계 협의체'이다.

협의체를 통해 완제품·혼합체의 상·하위 공급자간 정보소통을 통한 화학물질 정보를 파악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위해성정보 공동생산과 대리인 공동선임, EU 컨소시엄 참여 등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야별 전문교육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인데, 그 일환으로

산업계와 함께 실제로 등록서류 작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세 매뉴얼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06.12월 기구성된 협의체를 보완해 기존의 업종별 분과 확대 및 분야별 소그룹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운영(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고, 향후 동 협의체의 틀 안에서 주기적인 실무자 포럼과 CEO 포럼을 병설 운영하여 기업 전체차원에서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취약한 국내 인프라 대폭 확충

국내 유해성 평가를 위한 GLP는 REACH 수요대비 극히 열악한 바, 국내 GLP 기관을 REACH 요구 시험항목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충하고 시험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대량 생산·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EU 수출량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물질을 선정하고 '산업계가 공동'으로 위해성 정보를 생산해 DB화하는 '대량생산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험자료 생산시 OECD와 협력사업으로서 공동 추진함으로써 국내 GLP 시험자료의 인지도 개선을 도모하여 국내 산업계가 외국 GLP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EU 수준의 독자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구체적 방안은 산업계와 협의체에서 논의·결정하는 체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III. 맺음말

국제사회는 점차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위해성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서 금년 2월 UN에서는 화학물질 전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계획인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전략(SAICM)'을 채택한 바 있다. REACH는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는 제도로써, 기존 RoHS와 같은 제한된 환경규제를 넘어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이고,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무역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특단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바,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생산·연구·환경·유통 등 전부분이 참여하는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부품·원자재 공급업체 등 관련 산업계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산업계가 스스로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장으로서 '산업계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맞잡고 REACH라는 새로운 난관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국내 기업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공 지 사 항

-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 ⇒ 본지의 공급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친환경상품진흥원」내 TEN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TEN 온라인정보시스템(www.ten-inf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의 정보

- ① 2.5. ~ 2.9. 제24차 UNEP 집행이사회 및 세계환경장관 포럼 (케냐 나이로비)
- ② 2.7 RoHS 규제 대응 실무교육(Practical RoHS Compliance Training) (영국 레더헤드)
- ③ 3.6.~ 3.9. World biofuels markets Congress & Exhibition (벨기에 브뤼셀)
- ④ 3.7. ~ 3.8. 2007 중국 환경관리 컨퍼런스 (중국 상하이)
- ⑤ 3.13. ~ 3.14. 유럽 환경책임 지침(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세미나 (영국 런던)

2006년 0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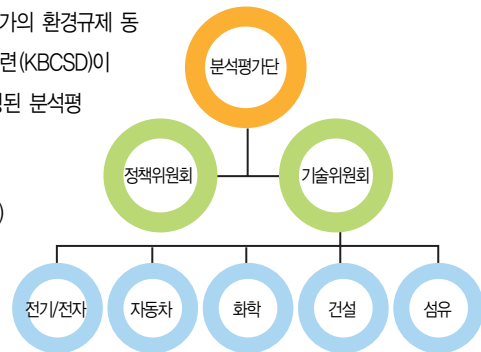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①	7 ②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007년 0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③	7 ④	8	9	10
11	12	13	14 ⑤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EN시스템운영체제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 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네트워크 운영은 친환경상품진흥원, KOTR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친환경상품진흥원,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전 화 : 02-358-6800(#231) | 팩 스 : 02-358-8560 | 이메일 : jung60@koeco.or.kr

